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2020. 11. 4

발 의 자:김승남·소병철·최종윤

윤재갑 • 김회재 • 김남국

오영환 • 박완주 • 김원이

송갑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1995년 수색구조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 유관기관 공무원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도개선과 기관 간 업무협조에 중점을 두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기술자문 기능은 제한적임.

최근 수색구조 환경은 과거 해수면 중심의 수색에서 벗어나 수중 수색을 포함한 전문적·기술적인 요건들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함. 또한 민간전문가 및 현장에 능통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색구조에 대한 실질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의 보완이 필요함. 실제로 2019년 11월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 당시 연안해역, 항공, 수중 수색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한 사례도 있음.

이에 각급 구조본부 소속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

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고, 수색 구조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 책조정·협력을 통해 해양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각급 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한다.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 구조 관련 정책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 앙,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장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수 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각급 수색구조기술위원회 제6조(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 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호협력 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 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 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 책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광역 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 및 지역구조본부장 소속으로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둔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수색 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다. 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삭 제>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 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에 각각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색구조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 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